# 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04호

##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| 제재대상 | 내용(회사명, 성명 등) |
|---|---|
| 기 관 | 한국투자증권(주) |
| 임 원 |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 통보 2명 |
| 직 원 |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3명 |

## 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등에서 규정하는 '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'에 대하여 한국투자증권(주)에 과태료(1건, 20백만원) 부과

○ **(수정의결)**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(5건, 100백만원)부과

| 제재대상 | 금전제재 | |
|---|---|---|
| | 원안 | 수정안 |
| 한국투자증권(주) | 과태료 (1건, 20백만원) 부과 | 과태료(5건, 100백만원) 부과 |

## 3. 조치이유

### 가. 지적사항

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

○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제2항, (舊)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7조 제3호, 제29조 제3호, 제4호, 제6호, 제7호, 제8호, 제10호에 의하면

금융회사는 ①프로그램 변경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, ②변경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을 복사 후 수정하여야 하며, ③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·무결성·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고, ④프로그램 반출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, ⑤운영체제,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고, ⑥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을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설치하기 전에 자체 보안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

- ①회사 ●●●●●와 ●●●●●●는 20xx. xx. xx. ~ 20xx. xx. xx. 기간 중 □□□□□□ 프로그램과 ◆◆◆◆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변경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미수행(□□□□□□ x회, ◆◆◆◆ xx회) 하였음

- ②●●●●●●는 20xx. xx. xx. ~ 20xx. xx. xx. 기간중 ◆◆◆◆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서 직접 수정(xx회) 하였음

- ③●●●●●는 20xx. xx. xx. □□□□□□ 매매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야간선물시장 운영시작 시간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테스트를 미실시(x회) 하였고,

  ●●●●●와 ●●●●●● ●●●는 20xx. xx. xx. ~ 20xx. xx. xx.기간중 ◆◆◆◆◆◆◆◆◆ 프로그램에 예상 환전금액과 실제 환전금액의 차이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미실시(x회) 하였으며,

  ●●●●●●는 20xx. xx. xx. ~ 20xx. xx. xx. 기간중 ◆◆◆◆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(xx회)하였음

- ④●●●●●●는 20xx. xx. xx. ~ 20xx. xx. xx. 기간중 ◆◆◆◆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아닌 프로그램 담당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반출(xx회)하였음

- ⑤●●●●●는 20xx. xx. xx. 시스템 프로그램인 △△△△△ 데이터베이스를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DB시스템 계정 비밀번호 변경작업을 관리자에게 미보고(x회)하였음

- ⑥●●●●●●는 20xx. xx. xx. ~ 20xx. xx. xx. 기간중 ◇◇◇◇◇◇◇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설치하기 전 자체 보안성 검증을 미수행(xxx회) 하였음

  → 이로 인해,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와 △△△△△ △△△△가 중단(약 x시간 xx분)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고, 환전업무 오류로 인하여 회사손실(약 xx백만원)이 발생하였음

## 나. 근거법규

○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제2항
○ (舊)「전자금융 감독규정」 제7조
○ (舊)「전자금융 감독규정」 제29조